

환경 단신

1. 프랑스, 상수원에서 높은 농도의 농약 검출

- 프랑스에서는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시험 결과, 농약에 의해 여러 곳의 상수원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
 - 1997년 및 1998년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상수원의 1/3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 이를 화학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물 1 L당 2 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된 곳이 검사대상 중 34%, 1 L당 1~2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곳이 10%를 차지하고 있음
 - 상수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농약은 옥수수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, 상수원 오염문제 때문에 많은 EU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제초제인 아트라진(Atrazine) 이었음
- 상수원 오염문제로 EU에서 사용이 곧 사용을 금지할 예정인 유기염소 살충제 린데인(Lindane)도 많이 발견됨
 - 오스트리아에 의해 수행된 EU 위해성평가 연구에서는 린데인을 발암가능 물질로 단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규제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린데인의 농업용 사용을 금지하였음
 - 그러나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살충제 사용은 아직 허용됨
 - 유럽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린데인의 사용금지 법안을 승인하면 회원국은 6개월 내에 린데인 함유 제품에 대한 사용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, 18개월 내에 린데인 함유 제품을 모두 없애야 함
 - Pesticide Action Network와 같은 NGOs에서는 린데인의 농업용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하여 환영하면서도 개미 살충제와 같은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허용됨으로써 인간은 린데인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함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18호)

2. 美 토양 정화계획, 경제적 파급효과 막대

- 美 EPA는 최근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지적 되어온 brownfields¹⁾ 프로그램이 오염부지의 복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23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함
 - 오염환경 복원 관련 직업교육 등 정화 관련 1,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, 재개발 관련해서는 5,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
 - U.S. GAO²⁾는 미국 내 brownfields가 대략 5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
 - Brownfields에 대한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지오염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수행하며, 특히 거주지인 경우 시민들은 brownfields 주변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
 - 미국 내 오염된 공유지와 공장부지들은 공원과 주거단지 그리고 운동 경기장으로 재개발되고 있음
- Brownfields 프로그램은 국가가 지역사회의 황폐화된 오염부지의 복원과 재개발을 촉진시키고, 궁극적으로 생산성 있는 부지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정적 으로 기술적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제도임
 - 미 EPA는 1999년까지 300개의 brownfields 예비조사사업에 대해 초기 2년 간 각각 20만 달러를 보조하는 지원은 미국 내 수 백 개의 brownfields를 생산성 있는 부지로 재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
 - EPA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추가적으로 50개의 새로운 brownfields 예비조사사업에 각각 20만 달러씩 지원하고, 현재 예비조사사업이 진행중인 50개의 부지에 대해 추가로 각각 15만 달러를 지원할 것임
 - 클린턴 행정부는 2001년도 예산에 800만 달러를 배정하여 40개의 brownfields 예비조사사업에 각각 20만 달러의 보조금과 기술을 지원할 예정임
- 많은 지역에서 brownfields에 대한 환경 오염 예비조사사업과 함께 오염 환경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음
 - EPA의 brownfield 경제적 재개발 안³⁾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갈망하는 개발자

1) 美환경청(US/EPA)은 부지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인지되었거나 확인되어 부지의 확장 또는 재개발이 곤란해진 부지로서 버려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중인 공업 및 상업부지를 일컬음

2) th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

3) EPA's Brownfields Economic Redevelopment Initiative ; EPA가 brownfields의 경제적인 재개발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brownfields를 보호하고, 평가하고, 안전하게 복원하여 지속적으로

와 오염부지 소유자가 지자체 및 정부와 연계하여 오염환경 복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창출함

- 일단 오염환경에 대한 복원사업의 실행이 결정되면, BCRLF⁴⁾가 각 부지 당 5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, 현재 100개 이상의 예비복원 부지가 선정되어 있음
- 또한,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오염정화 시 지역 노동자를 교육하는데 소요될 펀드가 조성되며, 이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

○ Brownfields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사례로 달拉斯에서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여 운동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음

- 부지의 오염평가를 수행한 뒤에 달拉斯 전자회사가 있었던 63.3 acre⁵⁾의 토양에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고, 토양 및 지하수에는 심각한 오염양상이 밝혀짐
 - 오염부지의 복원을 통한 재개발 사업은 막대한 환경 복원비용 및 재개발 비용으로 200~3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
- 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 11.6 acre에 이르는 일부 지역에서 지어질 예정이며, 운동 경기장은 건축 중에 있고, 나머지 지역은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, 많은 건설회사들이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

○ EPA의 Brownfields에 대한 경제적 재개발 안은 낮은 농도의 오염 현장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복원, 재개발하는 것임

- 황폐화된 도심 오염부지에 대한 복원과 재개발은 오염 환경의 복원을 통한 생활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, 주거지 그리고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전체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진작시킴
 -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고 도심의 새로운 주거지 창출은 직장과의 거리를 줄여 자가용의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의 이용증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음
- 지자체는 재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장기적인 세수 증대가 예상됨
- 지역시민들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들의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초석이 됨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19호)

재사용 할 수 있도록 주정부, 지역사회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것임

- 4) The Brownfields Cleanup Revolving Loan Fund ; brownfields 복원을 위한 회전 대출 기금으로 EPA가 brownfields의 오염 정화 사업 등에 지자체가 자신들의 회전 대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임
- 5) 1 acre는 4046.8 m²로서 약 1,226 평의 면적임

3. EU 의회,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

- EU 의회는 최근 의회 환경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을 비판함
 - 유럽의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기본정책이 진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다며, 집행위원회의 정책은 명확한 기준의 정의가 없는 정책과 대책들의 의미 없는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함
-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쓴고 있다고 지적함
 -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나, EU의 예비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간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거래제도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함
 - 따라서 EU의 예비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함
 - 국제배출권거래제(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)⁶⁾는 교토의정서에서 거론된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, 앞으로 11월 헤이그에서 열릴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안건임
 -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⁷⁾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음
- EU 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우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실행방안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
 -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,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온난화가스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포함해야 하며,
 - 기업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18호)

6) 교토 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각 국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, 각국이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고 저감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임

7) 에코브리프 13호, 8/1, ‘영국,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’ 참조